

예금 때문에 생긴 비용이 왜 대출금리에 반영돼 있었나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는 예금채무 등으로 정해지고 차주와 무관하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의 핵심을 금리 인하가 아니라 반영 항목의 제한으로 본다.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받은 예금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법정 부담이다. 특정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와는 무관하다. 그 항목의 대출금리 반영이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에서 금지됐다.

01 · 확정된 사실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은행 신규대출 금리 산정에서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월 30일 밝혔다.

항목	값	비고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6.30 발표
전면 반영 금지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	보증부대출 50% 이상 금지, 비보증부대출 100% 금지	
교육세	금융·보험업자 추가 부과 교육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은행 자체점검	연 2 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적용 대상	2026.7.1.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출 계약	

이번 조치의 근거는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전면 반영이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반영 금지의 준수 여부를 연 2 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출 계약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에 관한 수치를 발표문에 적지 않았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근거는 은행법 제 30 조 제 1 항이다. 이 조항은 은행이 한국은행법 제 4 장 제 2 절에 따른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최저율 이상 보유하도록 한다. 한국은행법 제 55 조 제 1 항은 예금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채무에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유하도록 정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은행이 지는 채무다. 은행이 내준 대출은 이 계산의 기준이 아니다.

예금보험료도 산정 방식이 같다.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잔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해마다 예금보험공사에 내도록 한다.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000 분의 5 를 넘지 못한다. 이 부담 역시 예금을 받아서 생긴다. 두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도 같은 금지 대상으로 열거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돼 있었다. 반영을 제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전까지 반영돼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로 운용한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예금금리를 낮춰 회수할 수도 있고 대출금리를 올려 회수할 수도 있다. 연구소는 뒤쪽이 선택되기 쉬운 조건이 있었다고 본다. 예금금리는 상품별로 공시돼 바로 비교되지만, 대출금리는 차주마다 다르게 산출되어 비교가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2018 년 2~3 월 중 9 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점검 대상은 은행이 금리를 산출하고 운용한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은 대출금리 산정 시 특정 항목의 반영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이 항목들이 법령이 부과한 의무비용이어서 산정 근거로 다투기 어려웠다고 본다.

바뀌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적용 대상은 2026 년 7 월 1 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출 계약이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는 계약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한 수준도 항목마다 다르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전면 반영이 금지된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에서 50% 이상 반영이 금지된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람은 2026 년 7 월 1 일 이후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한 사람이다. 같은 은행에서 같은 상품을 써도 6 월 30 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종전 산정이 유지된다. 만기가 길고 갱신 시점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에는 이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갈린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전면 반영이 금지된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다르다. 보증부대출은 50% 이상 반영이 금지되므로 50% 미만까지만 반영이 남는다. 비보증부대출은 100% 반영이 금지된다. 두 기관이 인하폭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연구소도 추정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제 1 항은 대출성 상품에 관해 금리와 상환 방법, 계약 체결로 부담하게 되는 총 금액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 열거는 「등」으로 열려 있고,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대출금리에 어떤 원가가 얼마씩 반영됐는지가 차주에게 제공되는지는 법률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금지된 항목이 실제로 빠졌는지의 확인은 은행의 자체 점검에 우선 맡겨져 있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차주가 자기 대출금리의 원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법률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제 1 항 라목의 열거는 「등」으로 열려 있고,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주체가 은행 자신이다. 연 2 회 이상 자체 점검해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점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 제한은 항목별로 적용된다. 대출금리 총액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니므로, 금지된 항목만큼 다른 원가 항목이 늘어나도 차주가 이를 구분해 확인할 수 없다.
- 보증부대출에서는 보증기금 출연금 반영이 50% 미만까지만 남는다. 남은 부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번 발표문에 없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2026년 7월 1일 이후 대출을 새로 받았거나 갱신했다면, 새 대출약정서의 금리를 종전 약정서의 금리와 비교한다.
- 대출약정서에서 만기일과 갱신일을 확인한다. 이번 기준은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갱신 시점이 확인 대상이다.
- 금리 구성에 관한 설명을 거래 은행에 요구하고,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아 둔다.

금융회사

- 금리 안내와 대출약정서에 반영이 금지된 항목과 반영이 남은 항목을 구분해 표시하는 방식을 마련한다.
- 연 2 회 이상 자체 점검한 결과를 차주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국

- 자체 점검 결과의 제출·공시 방식을 정해 점검이 은행 내부 기록으로만 남지 않도록 한다.
- 보증부대출에서 반영이 남은 50% 미만 부분의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을 마련한다.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설명의무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예금자보호제도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상품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형 대환대출(갈아타기)
금융사건	1만 2,279건의 대출에 이자가 더 붙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2026년 7월 1일 시행,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대출금리 전면 반영 금지	1 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 원문 전제본(KDI 게재일자 필드 2026.6.30 기준, 담당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첫 문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7.1.(수)부터 은행의 신규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목 부분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전면 반영이 금지". 원문이 "등"으로 열어 둔 열거이므로 항목 수를 달지 않았다.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67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 50% 이상, 비보증부대출 100% 반영 금지	1 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KDI 게재일 2026.6.30).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 금지 대상이 "50% 이상"이므로 반영이 남는 범위는 50% 미만이고, 50%는 금지 쪽이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67
은행 자체점검 연 2 회 이상, 결과 기록·관리 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1 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KDI 게재일 2026.6.30).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 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67
적용 대상은 2026.7.1.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출 계약	1 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KDI 게재일 2026.6.30). "해당 개정사항은 '26.7.1.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며..." 근거 법령은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으로만 적혀 있고 조문 번호는 본문에 없다. 첨부(R26061401.pdf)는 열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67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부과되는 교육세를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 금지	1 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KDI 게재일 2026.6.30).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대출금리에 반영이 금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67
은행의 지급준비금 보유 의무 근거는 은행법 제 30 조 제 1 항	1 차	은행법 제 30 조(지급준비금과 이자율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 1 항 영문본. "A bank shall hold not less than the minimum ratio of reserve requirements and reserve requirement assets under Section 2 of Chapter IV of the Bank of Korea Act..." 조문 화면에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03, May 17, 2010]"와 "<Amended by Act No. 11051, Sep. 16, 2011>"이 표시된다. 법령 단위 판본(Act No. 14826, 2017.4.18. 공포)은 같은 hseq 의 lawViewTitle.do 화면에서 확인했다. 영문 번역본이라 2026 년 개정본은 반영돼 있지 않을 수 있어 지급준비금 보유 의무 근거로만 인용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43323&cseq=1256722
지급준비금은 예금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채무에 지급준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1 차	한국은행법 제 55 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 1 항 영문본. "Any financial institution shall hold as reserve requirements an amount larger than that equivalent to reserve requirement ratio..."이며 기준은 예금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채무다. 조문 화면에 해당 조가 Act No. 14101(2016.3.29.)로 전부개정됐다고 표시된다. 법령 단위 판본(Act No. 15427, 2018.3.13. 공포)은 lawViewTitle.do?hseq=47917 화면에서 확인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47917&cseq=1164210
예금보험료는 예금 등의 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요율은 1,000 분의 5 를 넘지 못한다	1 차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보험료의 납부) 영문본.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며 산정 기준은 "the balance of deposits, etc.", 요율 상한은 "5/1,000"이다. 조문 화면에는 법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법령 단위 판본(Act No. 21065, 2025.10.1. 공포)은 lawViewTitle.do?hseq=72887 화면에서 확인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2887&cseq=2389209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제 1 항의 대출성 상품 설명 사항은 「등」 으로 열려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1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설명 의무) 제 1 항 제 1 호 라목 영문본. (i) "Description of a loan product, such as the interest rate, ... the term of the loan, and fee rates", (iv) "The total amount, including the loan principle and fees, to be borne by financial consumers...", (v) "Other matte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로 되어 있다. "such as"와 (v)의 위임 때문에 원가 항목별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금액의 제공 여부는 법률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았다. 법령 단위 판본(Act No. 17292, 2020.5.19. 공포)은 lawViewTitle.do?hseq=54646 화면에서 확인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62
2018년 2~3월 금융감독원이 9개 국내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해 일부 사례를 확인	1 차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2018.6.21) 원문 전재본. "금융감독원은 '18.2~3월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 세부 수치는 첨부(R1806727.hwp)에만 있어 본문에 쓰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7952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286 자	10 건	10 건 (100%)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은행이 연 2 회 이상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가 차주가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보증부대출에서 반영이 남은 보증기금 출연금 50% 미만 부분의 산정 근거가 공시 항목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